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2023. 11.



1. 일람표

(단위: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건	1	0	0	0	1	95,819	0	0
1	○○○○사업소	♣ ◆◆◆◆ 조성사업(건축) 추진 부적정	1	0			1	95,81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건축)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군 ○○○○사업소에서는 “♣♣ ◆◆◆◆◆ 조성사업(건축)”을 아래 [표 1]과 같이 2020. 12. 14. ■■■■■ 주식회사 ○○○○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 ◆◆◆◆◆ 조성사업(건축) 현황

(단위: 백만 원)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조성사업 (건축)	◆◆◆◆◆ (A=4,310.11㎡)	15,125	10,968	4,157	2020. 12. 14.	2021. 1. 7. ~ 2023. 11. 25.	■■■■■ 주식회사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고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거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증가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아래 [표 2]와 같이 2023. 4. 28.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계약일자	금 액		증감액	비고
		변경전	변경후		
♣♣◆◆◆◆◆ 조성사업(건축)	2023. 4. 28.	10,387,908	10,967,639	579,731	

그 결과 2회 설계변경 시 거푸집 수량산출의 경우 콘크리트 벽체 내부는 유로폼(보통)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폼(복잡)을 적용해서 49,600천 원, 내화페인트칠은 동일한 규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가정보지 가격을 적용하여 46,219천 원을 과다계상하는 등 총사업비 95,819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95,819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